

1. 개정이유

친환경자동차 보급이 확대되면서 배터리 등 화재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전기자동차·수소전기자동차·하이브리드자동차의 고전원배터리 등에 대한 검사기준을 내실화하여 도로 안전을 확보하고, 장거리 운행 및 과다 적재 등으로 다른 자동차에 비해 교통사고 위험도가 높고 사고 발생 시 대형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대형 승합자동차와 화물자동차의 검사기준을 강화하여 국민 다수의 생명과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.

2. 주요내용

가. 전기자동차·수소전기자동차·하이브리드자동차의 검사기준 및 항목 내실화(제80조, 별표 15 및 16, 별지 제48호의3서식)

고전원전기장치의 작동불량 상태 구체화 및 전자장치 진단 검사시 부적합 고장진단 코드를 마련하고, 전기자동차·수소전기자동차 등의 진단을 위한 전자장치진단기 사양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며, 자동차검사결과표를 자동차기능종합진단서로 일원화하여 모든 검사기관에서 동일한 검사를 안내받을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해당 서식에 배터리 상태 검사 항목을 추가하여 배터리의 상태를 진단할 수 있도록 개선
나. 대형 승합자동차·화물자동차의 정기검사 기준 및 방법 개선(제80조 제2항)

사업용 대형승합차의 앞바퀴에 내구성이 약한 재생타이어 사용을 금

지하고, 원동기의 비정상적인 진동·소음 발생, 윤활유 유량 기준 초과·과다 및 연료 계통의 심한 부식 등의 경우 자동차의 검사 결과 처리 시 부적합 처리하도록 규정

다. 자동차검사 부적합 기준 구체화(제80조, 별표 15·16·18)

구조의 제원허용오차 초과 또는 안전기준 부적합 기준 및 어린이 운송용 승합자동차 창유리의 가시광선투과율 검사기준 명확화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의 :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0조제2항제1호다목 중 “영 제8조제1항”을 “영 제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”로 하고, 같은 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의2. 원동기

가. 공회전 또는 무부하 급가속 상태에서 비정상적인 진동·소음 발생

나. 원동기 윤활유의 유량 기준 과소 또는 과다

다. 냉각계통의 손상 및 냉각수의 누출

제80조제2항제2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라. 사업용 대형 승합자동차의 앞바퀴에 재생타이어를 사용하는 경우

제80조제2항제5호다목 중 “연료”를 “연료계통(연료장치와 연결된 파이프, 호스를 포함한다)의 심한 부식 또는 연료”로 하고, 같은 항 제6호라목 중 “절연상태 또는 작동상태”를 “접속·절연·표시 및 설치상태”로 하며, 같은 호에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항 제13호 중 “운행기록장치·속도제한장치”를 “운행기록장치의 미설치, 최고속도제한장치”로 하며,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별지 제49호서식의 검사

부적합 통지서 또는 별지 제48호의3서식의 자동차 기능 종합”을 “별지 제48호의3서식의 자동차기능종합”으로 하며, 같은 항 제5호 중 “별지 제49호서식의 시정권고통지서”를 “별지 제48호의3서식의 자동차기능종합 진단서”로 한다.

마. 고전원전기장치의 전자장치진단 결과 중 절연저항, 작동상태 관련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고장진단코드 제80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80조의2(자동차기능종합진단 등) 제77조제2항에 따라 정기검사를 한 때에는 별지 제48호의3서식의 자동차기능종합진단서를 작성하여 1부를 검사신청인에게 발급하고, 1부를 제80조제1항에 따라 보관하여야 한다.

제8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따른 검사부적합 통지서 또는”을 “따른”으로 하고, 같은 항 제1호 중 “검사부적합 통지서 또는 자동차 기능 종합”을 “자동차기능종합”으로 하며,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중 “자동차검사부적합통지서”를 “자동차기능종합진단서”로 하고, 같은 호 나목1)을 다음과 같이 하며, 같은 항 제3호 중 “검사부적합 통지서 또는 자동차 기능 종합 진단서”를 “자동차기능종합진단서”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따른 검사부적합 통지서 또는”을 각각 “따른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6항 중 “자동차검사부적합통지서 또는 자동차 기능종합진단서”를 “자동차기능종합진단서”로 한다.

1) 최고속도제한장치의 미설치(설치상태의 불량을 포함한다)

제136조제1항제4호 중 “영 제14조의6”을 “영 제14조의7”로 한다.

제150조의2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한다.

제154조의2제1항 중 “영 제14조의6제3호”를 “영 제14조의7제3호”로 한다.

별표 15 제1호나목7)을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표 제2호가목16)나) 중 “기준에 적합”을 “기준(측정값 지시오차 $\pm 3\%$ 이내)에 적합”으로 한다.

7) 자동차에 전자제어장치가 없거나, 전자장치진단기로 전자제어 장치의 항목별 진단을 실시한 후에도 진단 처리가 불가능한 경우

다. 자동차가 검사기기·계측기·감각기관·서류 등에 의하여 검사 방법을 시행할 수 없는 상태인 경우, 해당 항목의 검사를 생략하고 제81조에 따른 재검사 신청 시 검사를 시행할 수 있다.

별표 16 제2호 비고란 4) 중 “Bag) 등에 관련된 센서”를 “Bag), 고전원 전기장치, 안전운전보조장치(저소음자동차의 경고음발생장치 포함), 구동축전지 및 연료전지 등에 관련된 전자제어장치”로 하고, 같은 란에 10)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0) 가시광선투과율 측정기의 측정 범위는 0 ~ 100%이고 정밀도 측정값의 $\pm 3\%$ 이내여야 한다.

별표 18 제1호의 검사용 기계·기구의 가시광선투과율 측정기의 자동차 종합정비업자 및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자란의 “1대 이상”을 “1대 이상

(측정범위는 0 ~ 100%, 정밀도는 측정값의 $\pm 3\%$ 이내일 것)”로 하고, 같은 호 주 제10호부터 제12호까지를 각각 제11호부터 제13호로 하며, 같은 호 주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0. 전자장치진단기는 원동기부분전자제어장치, 새시(동력전달장치 포함), 에어백(Air Bag), 고전원전기장치, 안전운전 보조장치(저소음자동차의 경고음발생장치 포함)에 관련된 전자제어장치를 진단할 수 있어야 한다.

별지 제48호의2서식을 삭제한다.

별지 제48호의3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.

별지 제49호서식을 삭제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별표 15 제1호 나목7) 및 같은 호 다목, 별표 18 제1호 주 제10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, 제80조제2항제6호마목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자동차검사 부적합 판정기준에 관한 경과조치) 이 규칙 시행 전에 자동차검사를 신청한 경우에는 제80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.

제3조(재검사에 관한 조치) 이 규칙 시행일 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한 정

기검사기준에 부적합 판정된 자동차에 대한 재검사 절차는 제81조의
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.

제4조(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)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
라 사용하던 별지 제48호의2서식, 별지 제48호의3서식 및 별지 제49호
서식은 2025년 3월 31일까지 이 규칙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
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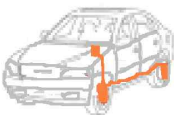
자동차기능종합진단서

검사일자: 년 월 일

자동차등록번호		소유자 명		차 명	
차 대 번 호		원동기형식		최초등록일	
다음 종합검사일 ¹⁾		재검사 기간 ²⁾		주행거리	km

1) 다음 검사는 위의 다음 종합검사일 기준 전 90일 이내, 후 31일 이내에 받아야 합니다.

2) 재검사 대상 자동차는 위의 재검사 기간 내에 재검사를 받아야 하며, 재검사 기간 경과 시 자동차검사 미수검 과태료와 검사 재신청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.

진단항목				안전진단기준(검사기준)				진단결과		진단의견		검사원	
조향계통		앞바퀴 정렬			옆방향 미끄러짐 정도 (1m 주행에 5mm 이내)								
		조향계통 설치상태 등			변형・느슨함・누유여부 파워스티어링 오일량								
주행계통		차축・타이어・휠			외관 손상・변형・돌출여부 타이어 상태								
		변속기 추진축 등			변속기 오일 오염도(진단이 가능한 경우로 한정함) 추진축・등속조인트(손상・변형) 클러치 유격상태								
		뒷바퀴 정렬(옆 방향 미끄러짐)											
제동계통 (브레이크 시스템)		제동력	앞축	전	앞축무게(kg)의 50% 이상			% (측정값: kg)					
				후	앞축무게(kg)의 50% 이상								
			뒷축	전	뒷축무게(kg)의 20% 이상			% (측정값: kg)					
				중	뒷축무게(kg)의 20% 이상								
				후	뒷축무게(kg)의 20% 이상								
			전체브레이크		전체무게(kg)의 50% 이상			% (측정값: kg)					
		주차브레이크		전체무게(kg)의 20% 이상			% (측정값: kg)						
		좌・우 차이 (편차)	앞축	전	앞축무게(kg)의 8% 이하			%(: kg)					
				후	앞축무게(kg)의 8% 이하			%(: kg)					
			뒷축	전	뒷축무게(kg)의 8% 이하			%(: kg)					
				중	뒷축무게(kg)의 8% 이하			%(: kg)					
				후	뒷축무게(kg)의 8% 이하			%(: kg)					
		제동계통 설치상태 등				견고한 설치・손상・오일누출 배력(booster)장치의 작동상태							
						디스크・패드상태							
		등화장치		전조등	광도	좌/우	3,000cd 이상			좌측밝기:	cd		
							우측밝기:	cd					
진폭	좌				설치높이 ≤ 1.0m	-0.5% ~ -2.5%		높이:	m				
	우			설치높이 > 1.0m	-1.0% ~ -3.0%		높이:	m					
기타등화				등화장치 점등 및 설치상태 등									
배출가스		휘발유 L P G		검사방법									
				일산화탄소(CO)									
				탄화수소(HC)									
				질소산화물(NOx)									
				공기과잉률(λ)									
		경유		검사방법									
				매연									
				질소산화물(NOx)									
				최대출력									
				엔진회전수									
배기, 소음 발산방지장치				배기관・소음기・촉매장치의 손상, 변형 등이 없을 것									
계기계통		속도계		40km/h일 때(32 ~ 44.4km/h)									
		계기장치		운행기록계・최고속제한장치 설치 및 작동여부									

(뒤쪽)

진단항목				고장코드			
자 기 진 단 센 서 점 검							
	배터 리	진단항목		진단결과			
		안전 점검	고전압 부품 절연		진단의견		
			배터리 셀 간 전압편차				
	배터리 모듈 온도						
	상 태	성능 점검	총 동작시간				
			누적 총·방전량				
			배터리 충전량(SOC)				
			배터리 열화상태(SOH)				
			급속 충전 횟수				
검사항목				결과 및 의견			
관 능 (육 안) 검 사	엔진오일 오염도 / 벨트상태 원동기 이상음 / 시동장치 / 방열기						
	동일성 / 차대 및 차체 / 물품적재장치						
	(승차 / 조종 / 완충 / 방화)장치						
	경음기 / (연결 및 견인 / 전기)장치						
	연료장치 / 내압용기 / 시야확보 / 창유리						
	기타장치						
서비스 제공							
종합 진단결과		<종합의견> <부적합 내용> <시정권고 내용>					

「자동차관리법」 제43조제2항, 제44조제1항, 제4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0조의2, 「자동차 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」 제5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발급합니다.

년 월 일

자동차검사소 검사책임자

인

※ 본 진단서는 고객님의 차량 관리를 위한 진단결과입니다.

210mm×297mm[백상지 80g/㎡]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80조(검사의 실시등) ① (생략)	제80조(검사의 실시등) ① (현행과 같음)
②자동차검사대행자 또는 지정 정비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검사결과에 대하여 적합 여부를 판정해야 한다. 이 경우 정기검사 또는 수리검사를 실시한 결과 적합하지 않은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이 다음 각 호(제20호부터 제22호까지의 사항은 수리검사의 경우에만 해당한다)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으면 적합 판정을 하고 해당 자동차소유자에게 그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.	②----- ----- ----- -----.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1. 동일성 확인	1. -----
가.·나. (생략)	가.·나. (현행과 같음)
다. 영 제8조제1항에 따른 구조의 제원허용오차 초과 또는 안전기준 부적합	다. 영 제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----- -----
<신설>	1의2. 원동기
	가. 공회전 또는 무부하 급가속 상태에서 비정상적인 진동·소음 발생

2. 주행장치

가. ~ 다. (생략)

<신설>

3. 4. (생략)

5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

가. 나. (생략)

다. 연료의 누출

6. 전기·전자장치

가. ~ 다. (생략)

라. 고전원전기장치의 절연상태 또는 작동상태의 불량

<신설>

나. 원동기 윤활유의 유량 기준 과소 또는 과다

다. 냉각계통의 손상 및 냉각수의 누출

2. -----

가. ~ 다. (현행과 같음)

라. 사업용 대형 승합자동차의 앞바퀴에 재생타이어를 사용하는 경우

3. 4. (현행과 같음)

5. -----

가. 나. (현행과 같음)

다. 연료계통(연료장치와 연결된 파이프, 호스를 포함한다)의 심한 부식 또는 연료----

6. -----

가. ~ 다. (현행과 같음)

라. ----- 접속·절연·표시 및 설치상태-----

마. 고전원전기장치의 전자장치진단 결과 중 절연저항, 작동상태 관련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

7. ~ 12. (생략)

13. 계기장치중 운행기록장치·
속도제한장치의 미설치(설치
상태의 불량을 포함한다) 및
속도계시험기에 의한 검사결
과 허용기준 초과

14. ~ 22. (생략)

③자동차검사대행자 또는 지정
정비사업자는 제2항에 따라 검
사결과를 판정한 자동차 중 부
적합 판정을 한 자동차에 대해
서는 별지 제49호서식의 검사부
적합 통지서 또는 별지 제48호
의3서식의 자동차 기능 종합 진
단서에 그 사유 등을 기재하여
신청인에게 발급(정기검사의 경
우 전산정보처리조직을 통하여
발급하는 것을 포함한다)해야
하며, 적합 판정(시정권고사항
을 포함한다)을 한 자동차에 대
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
른 조치를 해야 한다.

1. ~ 4의2. (생략)

5. 시정권고사항이 있는 자동차:
별지 제49호서식의 시정권고

는 고장진단코드

7. ~ 12. (현행과 같음)

13. ----- 운행기록장치의
미설치, 최고속도제한장치---

14. ~ 22. (현행과 같음)

③-----

--- 별지 제48호의3서식의 자
동차기능종합 -----

-----.

1. ~ 4의2. (현행과 같음)

5. -----
별지 제48호의3서식의 자동차

통지서의 발급

④ ~ ⑥ (생략)

제80조의2(자동차기능종합진단 등) ① 제77조제2항에 따라 정기검사를 한 때에는 별지 제48호서식의 자동차검사표 또는 별지 제48호의2서식의 자동차정기검사결과표를 작성하여 1부를 검사신청인에게 발급하고, 1부를 제80조제1항에 따라 보관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제80조제3항의 검사부적합통지서의 발급은 자동차정기검사결과표의 발급으로 같음한다.

② 자동차검사대행자 및 지정정비사업자는 법 제43조제1항제2호에 따라 정기검사를 시행함에 있어서 정기검사항목과 중요부품에 대한 진단결과를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자동차검사표 또는 자동차정기검사결과표에 같음하여 별지 제48호의3서식의 자동차기능종합진단서를 자동차소유자에게 발급할 수 있다.

기능종합진단서-----

④ ~ ⑥ (현행과 같음)

제80조의2(자동차기능종합진단 등) 제77조제2항에 따라 정기검사를 한 때에는 별지 제48호의3서식의 자동차기능종합진단서를 작성하여 1부를 검사신청인에게 발급하고, 1부를 제80조제1항에 따라 보관하여야 한다.

1) 최고속도제한장치의 미
설치(설치상태의 불량을
포함한다)

2) (현행과 같음)

3. ----- 자동차기능종합진단
서-----

② (현행과 같음)

③

따른

따른

서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. 1. · 2. (생략) ④ · ⑤ (생략) ⑥ 제1항에 따른 재검사기간 내에 적합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제80조제3항에 따라 <u>자동차검사부적합통지서</u> 또는 <u>자동차기능종합진단서</u>를 발급받은 날에 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. 제136조(정비책임자의 직무 등) ① 법 제64조제3항에 따른 정비책임자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. 1. ~ 3. (생략) 4. 주행거리계를 수리하거나 교체하는 경우에는 법 제71조제2항 단서 및 <u>영 제14조의6</u>에 따른 주행거리계의 변경 사유 및 증명 자료의 확인 ② (생략) 제150조의2(자동차관리업무의 전산처리) ① (생략) 제154조의2(주행거리계 고장확인 신청 등) ① <u>영 제14조의6제3호</u>에 따라 주행거리계의 고장 또	----- -----. 1. · 2. (현행과 같음) ④ · ⑤ (현행과 같음) ⑥ ----- ----- <u>자동차기능종합진단서</u>----- -----. 제136조(정비책임자의 직무 등) ① ----- -----. 1. ~ 3. (현행과 같음) 4. ----- ----- <u>영 제14조의7</u>----- ----- ② (현행과 같음) 제150조의2(자동차관리업무의 전산처리) (현행 제1항과 같음) 제154조의2(주행거리계 고장확인 신청 등) ① <u>영 제14조의7제3호</u> -----
---	--

는 파손 여부에 대하여 확인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97호의2서식의 주행거리계 고장확인신청서를 자동차검사대행자에게 제출하고 해당 자동차를 제시해야 한다. ② (생 략)	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② (현행과 같음)
---	---